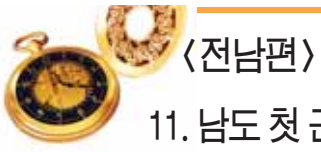


日 수탈 위한 교두보... 도시 개선 아닌 총독부 국토계획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근대화탐사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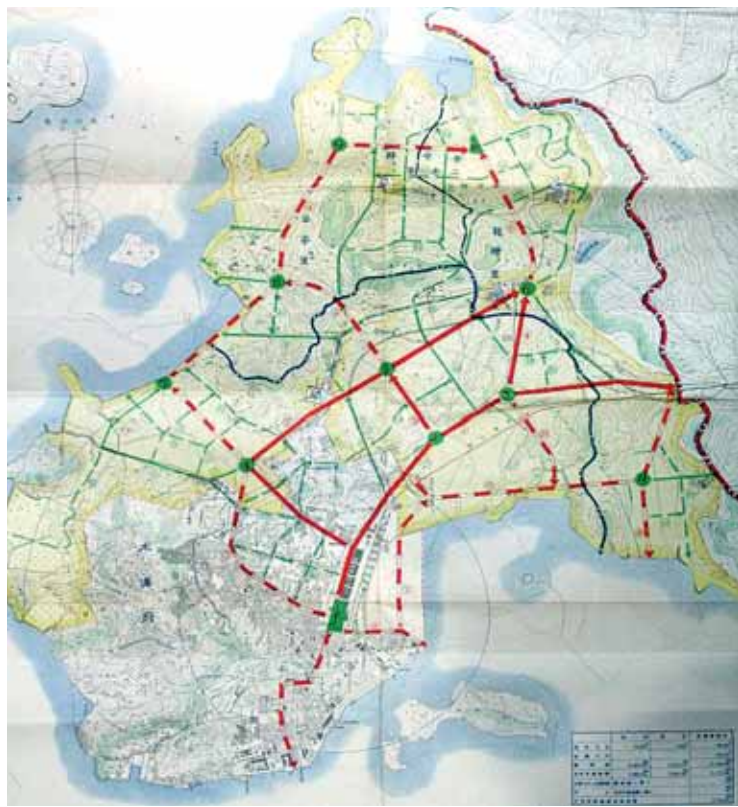


11. 남도 첫 근대 도시계획 수립하는 목포

1936년 지자체 배제하고 일방추진
차도 중심·외곽지역 우선 개발 등
획일적 구성, 각종 도시문제 유발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1957년 목포시 전경. 해방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일제의 가옥이나 거리가 그대로 유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지 시가지는 을씨년스럽다.



목포 최초의 법정도시계획도면. 이 도면은 시설현황, 관광위 위치 등 계획 수립 당시 목포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1000m 단위로 생활권역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해방 이후 일부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 목포시가지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일본인들이 남긴 건축물들. 서양식 근대건축양식을 본뜬 이들 건축물들은 적산불하 과정을 거친 뒤 대부분 철거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은 일제에 의해 1934년 6월20일 제정·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법이었다. 도시계획 관련 법규의 필요성은 일본 본토에서 1919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1920년대 초부터 식민지 조선의 경제·사회의 주요인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수도 경성의 경우 민간 유지가 모여 경성 도시계획연구회를 조직해 활동했고, 각 도시에서 '시구개정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일본 본토와 같은 도시계획법 제정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안만 논의되고 실제 제정이 이뤄진 못했다. 재정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인 주거지역의 도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목포의 시구개정사업도 거부한 일제가 그보다 더 큰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1930년대 초부터 조선의 각 도시는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라는 임무가 주어지고 따라서 일본인 거주지역만이 아니라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성을 시작으로 부산·목포·인천·청진·군산·마산 등과 같은 항구 도시부터 소위 말하는 시가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가지계획법이 갑자기 제정된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나진항 건설이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함경도 나진에 만주로 향하는 철도를 가설해 일본의 나가타항에서 오는 물자를 쉽게 수송할 목적이었는데, 토지 수용이나 용도지역 설정 등을 위해 법규를 제정한 것이다.

사실 이 법규의 제정에는 이러한 직접적인 이유 외에도 간접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우카기 총독은 조선 공업 화정책을 내놓고 각 도시를 산업도시로 정비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고 1927년 총독부 정부총감인 이케가미 시로는 오사카를 근대 도시로 탈바꿈시킨 시장 출신으로 도시계획에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에 '도시를 계획하는 사고'가 도입됐나 이것은 유럽과 북미의 도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지 못하고, 국토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로 이뤄졌다. 이는 획일적·하향식 도시 구성이라는 우리나라 도시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1935년부터 앞서 언급한 주요 17개 도시의 시가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독부 내무국은 전문 기사를 파견해 주민증가율, 물산의 생산 및 집산사항, 상하수도시설, 주거·상업·공업지구의 구분, 풍광, 기상 등의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를 내렸다.

언제 목포시가지계획의 수립이 완료됐는지에 대해서는 불확

살하지만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문서 중 1936년 11월17일 개최된 목포부회의 회의록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이 때를 전후로 목포시가지 계획의 상당 부분이 드러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회의에 이와미야 총독부 기사가 참여했고, 목포시가지계획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와미야는 이 회의에서 약 1시간40분간 목포시가지계획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증가율을 감안해 계획 인구를 1965년에 14만명으로 산정했고, 주거가능면적으로 1인당 83㎡로 했다. 또 목포의 가로가 그 성장세에 비해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로망의 완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계획가로를 결정해 앞으로 개발을 통제하도록 했다. 도로사선제한을 통해 고층건물은 큰 도로 주변에만 건립하도록 했으며, 교통의 안전을 예상해 가로는 대로·중로·소로로 구분하고, 소로 이하는 목포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가지계획의 의의적인 면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계획의 특징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난감해 한 것 같다. 짧은 시간동안 의원들이 이와미야 기사에게 질의한 사항은 "주거불가능지에 건축이 가능한가?", "30년 후의 목포를 계획하는 이 안이 절대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한가?" 등의 단순한 질문만 이어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버린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시가지계획법에서 시가지계획구역 및 시가지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회(지금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조선총독이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 중간에 시가지계획위원회(지금의 국토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의 정부총감이었고, 총독부 국장급 인사, 각도지사, 군부인사, 토목관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목포시가지계획도 이 위원회에서 다루었다.

1937년 1월 19일~20일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 의제4호~6호로 목포시가지계획에 관한 건이 다루었다. 이 회의에는 목포부와 관련된 인사는 없었고 논의도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목포시가지계획은 1937년 3월23일에 총독부 고시 제187호로 제정 공포됐다. 목포시가지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에서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포 시가지계획의 계획구역 내의 당시 인구는 5만8000여 명인데, 30년 후 1965년에 14만 명으로 추정했다. 면적 1513만8000평 가운데 표고 50m 이하를 거주가능구역으로 하고, 그 가운데

1200만㎡에 추정인구 14만 명을 할당, 1인당 86㎡로 산정했다. 1인당 이상적인 계획면적은 100㎡지만 목포의 지형으로 인해 이 이상 늘리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로계획은 거주 가능한 구역에 결정했고, 목포의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아 집단 거주지역을 5곳으로 구분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계획가로의 종류 중 가장 폭이 넓은 대로 제1류(35m 이상 45m 미만)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 대로 제2류(30m 이상 35m 미만) 이하로 계획가로를 결정했으며, 폭원 12m 이상 도로 52개 노선이 그려졌다. 시가에는 대로 제3류(25m 이상 30m 미만)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해 동시에 중로 제3류(10m 이상 15m 미만)를 두고, 기존 시가지가 아닌 대부분 신시가지 지역에 이 같은 가로망을 조성하기로 했다.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하는 면적은 876만6000㎡이며, 거주가능 면적의 약 70%나 됐다. 즉 신시가지개발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인데, 해방 이후에도 이 사업계획에 따라 택지 개발이 이뤄졌다. 기존 시가지를 방치하고 인구나 시설이 없는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손쉬운 방식은 두고두고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목포시가지계획은 목포각곡거류지 설계, 목포 시구개정사업에 이은 세 번째 도시계획이자 목포 최초의 법정 도시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1920년대 목포부의 시구개정을 통해 한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개선 구상은 무시하고, 총독부가 국토계획적 차원에서 수립한 계획이었다. 해방 이후 1963년에 서야 목포 도시계획변경으로 일부 가로가 처음 변경됐지만 골격은 그대로였고 지금의 목포시가지는 이 계획 하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지금 목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도시계획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획일적·하향식 구조 ▲주민참여 미흡 ▲반발 없는 외곽지역 우선 개발 ▲차도 중심의 도시 구성 등은 모두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시가지계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 서비스포드락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동일방문 고객별-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